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275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이한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소54070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D저작권협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2. 12. D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와 5년간(상호이의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 원고의 저작물인 동시 'C'의 저작권관리를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저작물을 아래 목록의 피고 발행 참고서에 각 수록한 후 발행·배포하였다.

원고 저작물 수록 도서명	출판일
E	2005. 9. 1.
F	2008년 2학기
G	2009. 5. 10.
H	2009. 5. 10.

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습자료협회에 어문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임하였고, 학습자료협회가 저작권협회와 위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학습자료협회에 위 기간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1년마다 재발행되는 참고서류(학습지 등)의 경우 2011. 8. 3. 이전까지의 저작권협회의 신탁 저작물 사용료는 10,000부 발행 기준으로 시 한 편당 17,8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3, 4,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저작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이득액 또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인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고가 저작권협회에 'C'에 대한 저작권관리를 신탁한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참조), 신탁 해지 후 원고가 저작권협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거나 혹은 원고와 저작권협회 사이에 신탁기간 중에도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저작권협회(채무자)에 대한 피고(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 분배청구권(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협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채권자대위).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저작권협회가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채권자대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이현석

판사 곽윤경